

##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

### 서문

한쪽 당사국인 대한민국(이하 “한국”이라 한다)과

다음의 다른 쪽 당사국(이하 “중미 공화국들”이라 한다)은

코스타리카 공화국,

엘살바도르 공화국,

온두라스 공화국,

니카라과 공화국, 그리고

파나마 공화국

당사국들 간 우호 및 협력의 특별한 결속을 강화하고,

자유무역지대가 당사국들의 영역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확장되고 안전한 시장을 창출하고, 투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을 창출하여, 세계시장에서의 그들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함과 동시에 각국의 발전단계와 경제규모의 차이를 인정하고,

당사국들의 영역 간에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함으로써, 당사국들의 영역에서 생활수준을 제고하고, 경제 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,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, 일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,

당사국들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을 제정하고, 당사국들의 영역 간 무역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하며 투자를 촉진할 것을 추구하고,

이 협정이 환경 보호 및 보전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행되어야함을 인정하고,

「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」과 당사국들이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적 및 양자적 협력 기제하의 그들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여, 그리고

공공 복지를 수호하기 위한 그들의 유연성을 유지하며,
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